
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I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 실시 기간에 따라 **최고 300%의 가산세**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**정부수입인지를 구입** 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**인지세(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2차 전 주택형 : 15만원)**를 납부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***소인 :** '소인'은 해당 수입인지가 사용 완료되었음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절차입니다. '소인'된 전자수입인지는 '재사용' 또는 '환매'가 불가하오니 착오로 소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***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**
 - **과세대상 :**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 - **납부기한·방법 :**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변경 승인일·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-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 -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·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- 가산세 개정사항('21.1.1. 부터 적용) ***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**
 - **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**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 - **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**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 - **6개월 초과 :**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I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 방법안내

1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등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4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

5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**1회에 한하여 출력**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재발행 불가)

